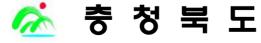
#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016. 12



# 제1장 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지방하천인 영동천의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 주민욕구의
   다양화 등으로 유역 내 치수, 이수, 환경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하천정비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따라서, 영동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 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 또한, 영동천 하천기본계획수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환경적 악영향의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본 전략환경 영향평가의 목적이 있음.

# 1.2 과업의 범위

○ 본 과업 계획하천인 영동천은 금강의 제1지류로서, 지방하천 구간 17.70km(기 수립 연장: 10.80km)중 영동군 영동읍 및 심천면 관내 7.80km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함.

# 1.3 계획의 추진근거

#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1항과 동 시행령 제7조 2항 및 【별표 2】의 『2. 개발기본계획』중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동 시행령 제22조 2항 및 3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전략환경영향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는 다음 표와 같음.

#### [표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행정계획의 종류·규모	협의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및 개발	(3)「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1.4 계획의 추진경위 및 일정

○ 2016년 02-04월 :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착수

○ 2016년 05월 : 평가준비서 제출

○ 2016년 06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6년 0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2016년 08-09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관계기관 협의요청

○ 2016년 09-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고·공람

○ 2016년 09-10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 수렴 완료

○ 2016년 12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 2016년 01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의견 수렴 완료(예정)

# 1.5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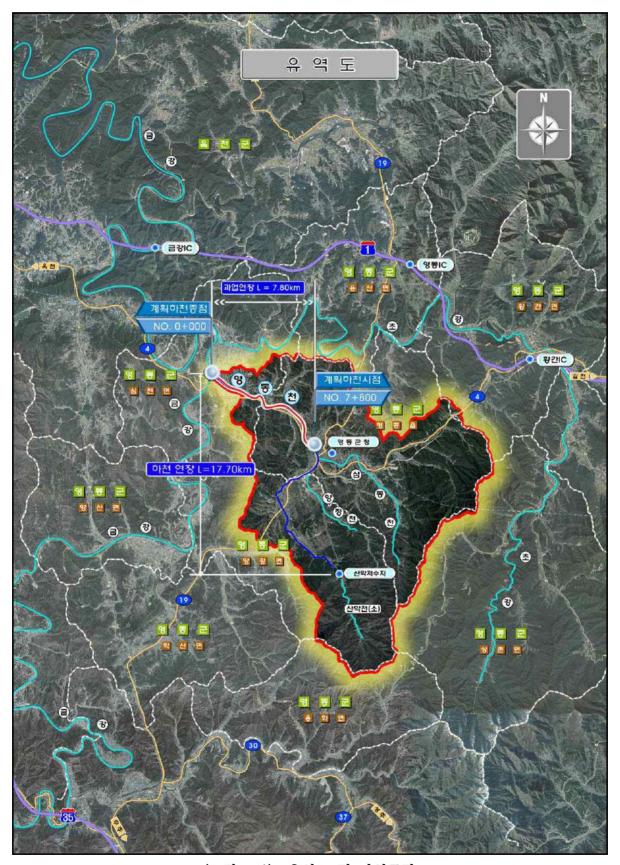
# 1.5.1 일반내용

## [표 - 2] 계획의 내용

구 분	내 용
계 획 명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과 업 기 간	2016. 2. ~ 2017. 2.
 하 천 등 급	지방하천
계획시행자	충청북도
승인기관	충청북도

## [표 - 3] 영동천 과업 범위

구 분		위치		하천	계획	하천지정
		시 점	종 점	연장 (km)	수립 (km)	근 거
어드권	고 시	충북 영동군 영동읍·양강면 경계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금강(국가)합류점	10.80	10.80	충북 111호 (1965.12.29)
영동천 (지방하천)	금회과업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67-134 (영산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금강(국가)합류점	17.70	7.80	-



(그림 - 1) 유역도 및 과업구간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2.1 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획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금강유역환경청, 충청북도청, 영동군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2.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공고

## 가.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

○ 충청북도청

# 나. 신문공고

- 중앙일간지
- 한겨례신문 : 2016년 9월 9일 금요일
- 지방일간지
- 충청타임즈 : 2016년 9월 9일 금요일

# 다. 정보통신망 게시

- 충청북도 홈페이지 : 충청북도 공고 제2016 926호
- 영동군 홈페이지 : 충청북도 공고 제2016 926호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 라.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년 9월 9일 ~ 2016년 10월 12일(20일)
-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충청북도 치수방재과, 영동군 안전관리과,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 마.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

# 2.2.2 주민설명회 개최

#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16년 9월 29일 (목) 14:00

○ 개최장소 :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2층

# 나. 참석자

○ 참석인원 : 19인

- 지역주민 : 지역주민 10인

- 충청북도 : 치수방재과장 과장 외 1인

- 보 은 군 : 안전관리과 과장 외 1인

- 용 역 사 : 동림건설기술 2인, ㈜ 유일 3인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결과(관계기관 및 주민)

○ 금강유역환경청 : 환경평가과

○ 충청북도청 :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 영동군청 : 안전관리과, 환경위생과

○ 지역주민 : 3인(노원구, 류기수, 김동오)

# 2.2.3 주민의견수렴 관련 자료

#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신문공고

#### 신문 공고

#### 하거리

2016년 09월 09일 (금 19면 공고/고시

충청불도 공고 제2016 - 926호

#### 영동천·초강·보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영동천·초강·오덕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 향평가서(초안)과 하천구역(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와 투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 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 충청북도지사

#### 1.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개요

하천명	위치	연장(km)	유역
영동천	영동군 영동읍 ~ 영동군 심천면 (급강 합류)	7.80	금강
초 강	영동군 용산면 ~ 영동군 심천면 (금강 합류)	14.03	금강
보청천	옥천군 청산민 ~ 옥천군 청성면 (금강 합류)	16.32	금강

#### 2.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림기간 : 2016. 9. 9.~2016. 10. 12.(20일) 공림장소 : 도 치수방재과 및 하천별 해당 군 하천부서,
- 음·면 사무소 \* 공고문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신문공고(일간지 및 지역지)

#### 3. 주민설명회 개최

- 보 청 천: 2016. 9. 28.(수) 14: 00 옥천군 청성면사무소 초 강: 2016. 9. 29.(목) 10: 30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영 롱 천: 2016. 9. 29.(목) 14: 00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가간: 2016, 10, 21, 18:00 (공람가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방법: 공람기간내 서류일란 후 서면 제출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치수방재과(☎043-220-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타임즈

2016년 09월 09일 (금) 07면 오피니언

#### 충청북도 공고 제2016 - 926호

#### 영동천·초강·보청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하천구역(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역동천 · 초감 · 오더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역향곽가서(초안) 과 하천구역(안)에 대하여 「환경역항평가법」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엔경 제13조, 제14 조. 제1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

#### 1 하처정비기보계획의 개요

하천명	위치	연장(km)	유멱
영동천	영동군 영동읍 ~ 영동군 심천면 (급강 합류)	7.80	금강
초 강	영동군 용산면 ~ 영동군 심천면 (급강 합류)	14.03	금강
보청전	옥천군 청산면 ~ 옥천군 청성면 (급강 합류)	16.32	금감

#### 2.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16, 9, 9, ~ 2016,10,12, (20임)
- 공략장소: 도 치수방재과 및 하천별 해당 군 하천부서, 읍 · 면사무소 ※ 공고문은 도 및 시 · 군 홈페이지 계시, 신문공고(일간지 및 지역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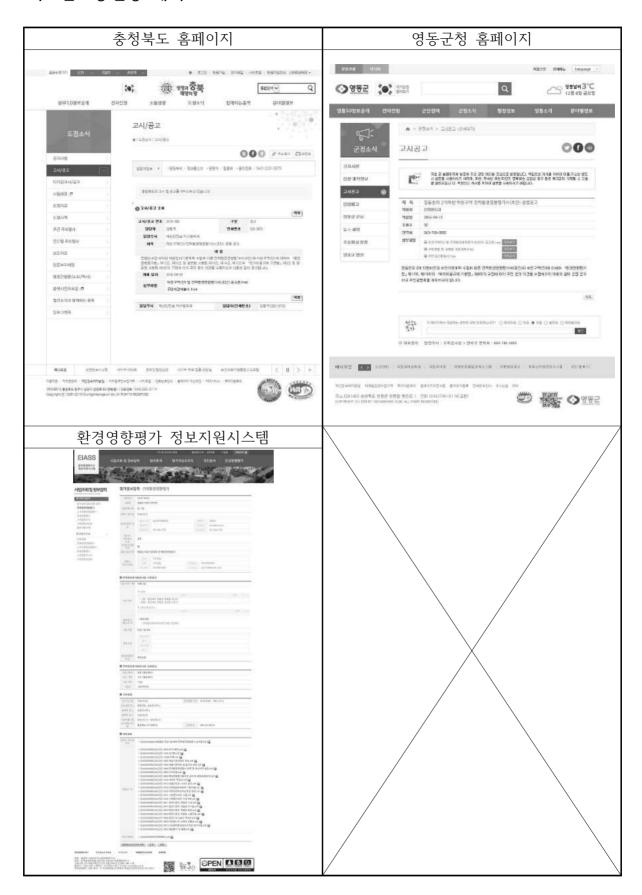
#### 3 주민석명회 개최

- 보청천: 2016. 9.28.(수) 14:00 옥천군 청성면사무소
- 초 강: 2016, 9.29.(목) 10:30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 영동천: 2016, 9,29,(목) 14:00 영동군 심천면사무소

####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16.10.21. 18:00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방법 : 공람기간내 서류열람 후 서면 제출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치수방재과(20043-220-2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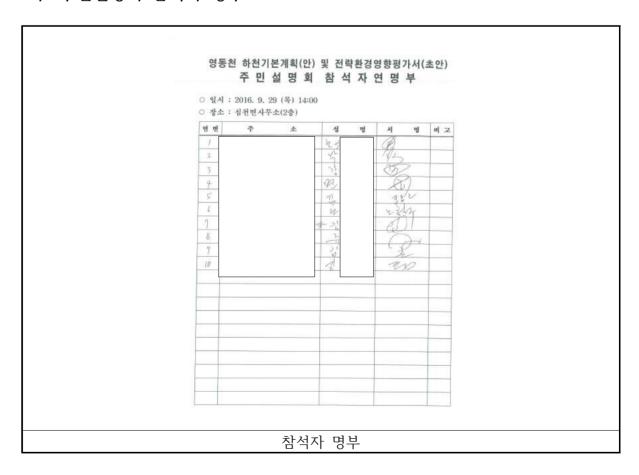
## 나. 전보통신망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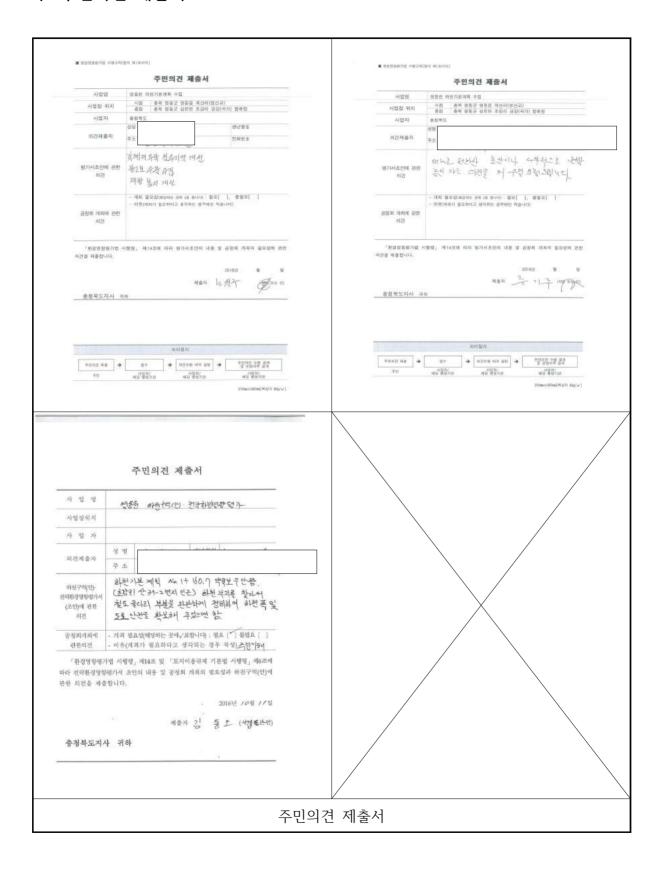
# 다. 주민설명회 관련사진



# 라.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 마. 주민의견 제출서



# 2.2 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개요

# 2.2.1 의견수렴 및 검토의견 등 관련자료



## 충청북도 수질관리과(2/2)

# 영동군 안전관리과(1/2)

#### 검토의견서(16-95)

- □ 건명 : 영동천외 2건 하천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서(초안) 협의
- □ 관련문서 : 처수방체과-11702(2016.9.7)□ 수질관리과 검토의견

뱀	형	검 또 의 건	비고
÷ 1	로 법	- 해당사람 없음	시설6급 김광제
자수	도법	- 해당사항 없음(위약처리)	시설7급 소대형
촉진및	웨이용  지원에 한법	- 해당사항 없음	시설?급 조대형
지하	수법	- 해당사학 없음	보전?먑 정미순
금 장	오 업 송광제	- 동계회자구는 금장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요조에 의한 금본L보장A. 순장A 단위유역에 해당되어 수집오업충량리기본 병점 개명조에 따라 구조물리의 등 공사년행시 지역개발부하를 범위 내에서 체훈부하당을 활동받아 추진하여야 하므로 꼭 단위유액별도 성공연(금본L. 초강A). 유현조(보장A)관리부석의 사원협의하여야 함	환경6급 목 <del>경우</del>
7 11.0	수 번 구 역	- 사업여정지는 수번구역으로 금장수계를관리 및 주민지원 동여 관한 법률 제5조(행위제한)에 의가 행위 제한 여꾸를 사업시행전 명등군과 사전혐의 하여야 함	행정6급 집원기
한 강	수 번 구 역	- 책당사항 없음	보건6급 이경이
환경 정책 기본법	특별 대목 지역	- 해당사한 없음	행정6급 김원기
7	타		

끊지 희안에 넘치는 해안보우 연물





수신 출청북도자사(치수밤재과장)

제목 영통헌, 초감천 하천가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사 의견서 제출 처수방재파-11702(2016.09.07)호와 관련하여, 영통한, 초강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 심사 의견서 1부. 끝.

저난지방점장 백음화 自主자 시형 단점관리과-18030 (2016. 8.23.) 접수 치수보재과-12412 (2016. 9.29.) 유 29103 - 출청북도 영웅구 명통를 통청로 1. 명동구청 약경과리과 / http://www.vd21.go.kd/ 근화년호 003-760-9933 역스번호 043-740-9909 / sacubenr@korea.kr / 대국민 급개

#### 영동군 안전관리과(2/2)

# 영동군 환경과(1/2)

함께 만드는 지방자의!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용을 보장합니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사 의견서

과 업 명	영동천, 조강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	2016.09, 08(号) - 2016, 09, 23(금)
검토의견	□ 환경영황평가 대상자역  -병기항목과 범위원장의 전반적인 사항이 직접하게 제시되었다.  도지이용구상안  -하전의 생대원광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도록 권토가 민준하며, 지수 및 이수 가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권토하여야 함.  - 환경모정방안의 대안  -분 사업계획은 이수 및 자수, 하천분강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하천 단절의 생태 경관자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하대, 특히 사업구간 중 자연결관이 수건하고 생태적 가겠가 목부한 자연은 환경회은이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권하여야 함.  -한지의 독성과 하천의 유수를 고려, 가급적 인공적 곡선하현은 지양하고 연일한 기업생태란을 조사를 통하여 하천 구간내 자연서식 식생대가 변형되기나 단결되지 않도록 천원경적인 기법을 적극 건물하여야 함.  - 평가 함복·범가/방법 등  -강우시 도사용으로 인하여 하천에 따라가 없도록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기를 조심하고 기배수로 설치 및 충분한 규모의 청사지를 설치하여야 하여야 함.  -한 건목욕임망령의 자녀동안에 대해 주민의건물 목국 수업하여 반영하고 배신먼지, 소문진동 등의 흥경오염 자급방안을 결제이 이명하여 주면 환경 및 주민생쇄대 병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면 가 없는데 공무 주업 등에 관심하여 한데 가 없는데 공무 기를 되어야 한다고 배신먼지, 소문진동 등의 흥경오염 자급방안을 결제이 이명하여 주면 환경 및 주민생쇄대 대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여, 시작주진과장에 인원이 발생을 결속 목적인에 생태한만을 결구하여야 한다.

삼기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의견을 제출합니다.

환경영향명가협의회 위원 정 진 설 생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공과 회약에 설치는 해안보우 영혼

동 영 균



수신 출청북도지사(치수밤제과장)

제목 영통현회 1건 하철기본계회 수립에 따른 건략환경영향평가(초안)협의 의견제출 치수방재과-11702(2016.8.T.)호와 관련하여 영통원의 1건 하천기본계획 수립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명개(초만)협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불 임 : 의견서 2부, 끝,

주무관 검단속 주무관 박영후 현조가 주무리 홍기운 주무리 박영준 (2016, 9, 29.) 접수 최수방재과-12426 (2816, 9, 29.) AISS \$200-35200 후 20140 - 충청탁도 영웅군 영웅읍 웅정로 1 (영웅군왕) / http://www.yd21.go.kg/ 큰화년호 043-740-3404 역스번호 740-3409 / kys3333@korea.kr 함께 만드는 지방자리!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내용을 보장합니다!

여야 함.

기 바람

#### 영동군 환경과(2/2)

영동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환경과 의견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7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으로 숨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숨인 등을 하기 전에 급장음역환경철과 협의하여야 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필요연총량할당 대상이므로 영동군수와 사전 혐의 하

공사로 인한 먼지, 도사유출동 환경호염발쟁이 예상되고, 영동천 주변은

도심지역으로 주거생활 환경에도 연항이 여상되므로 천환경작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간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도심지역동 주거지역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실정시 확대하여 평가하

- 사업구간은 하천인 금강 상류로 토사 유출 방지 제획 및 유류 유출시 미상연락제계등 자체방제계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등 환경환권 규정에 따른 인·허가·신고등의 사전절차 인허가 사항을 점토하기 바람,

#### 금강유역환경청(1/6)

#### 발목한 대한민국들 여는 경부3.0 금강유역환경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알림[보철천, 초강, 영동천 하천가본계획 수립]

1. 치수방재과-11702(2016. 9, 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협의 요청한 '보청천, 초강,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략환경명항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각1부 끝



환경관리국장 전철 201 배면지 오건하 손선원

시행 환경병기과-6216 우 34142 대전환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2016, 10, 20.) 접수 치수방재과-13885 (2016, 10, 20.) / http://www.nie.go.kr/gg/

영동찬 하찬기본계획

图象图象 002-885-0756 图本图象 042-885-0759 / sandy618@we.go,w / 대국민 공개

# 금강유역환경청(3/6)

#### 금강유역환경청(2/6)

#### 명동천 하천기본계획

#### Ⅱ 항목별 검토의견

音楽な

#### 1. 계획의 적정성

- 가, 단순히 관련 계획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계획의 일치하는 내용 및 변경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
- 나. 영통전 총 연장 증, 기 수립한 하전기본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계획의 연계성(통일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2. 입지의 타당성

#### 가. 자연환경의 보전

####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범정보호종인 수달,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주요 생물서식지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구간 내 서식 또는 서식 가능성이 있는 주요보호좋은 도면 및 위성사진에 출현지진, 출현 예상지점, 분포 등을 개수계획과 중첩(구간좌표 포함)하여 표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 나) 동·식품상 조사 항목 중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문헌조사 결과를 누락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다) 하상정비는 최소화하여 기존 하천의 자연 하상 및 식생을 가능한 보존하도록 하고, 수질 개선 및 생물의 서식지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형 및 식생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 사 업 개 요>

- 사암명 : 명동전 하전기본계획(GG20160383)
- 이 위 차 : 충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807-134~실천면 초길리 급감[국가] 한류점
- O 규 모: 7.8km
- 사업자(승인기관) : 충청북도(충청북도)

#### 1 총괄

- 가. 동 내용은 영동권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검토의견으로서, 아래의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하천의 이·치수 측면 뿐 아니라 자연진화적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하진기본계획 수립 시 하진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림하여야 함.
- 하천환경과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의 정비 계획 수립
-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검토의건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하천 상 하류 구간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천 유역 영향과 관리를 위한 직정한 저감방안을 **갖구하여야 한**
-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결과를 도출한 근거 및 방법 등을 병시하고, 결과는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 금강유역환경청(4/6)

#### 금강유역환경청(5/6)

#### 영동찬 하찬기본계획

#### 라) 현재 개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보와 낙자동이더라도 유량이 극히 적거나 수절이 좋지 않아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천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 새들보의 경우, 어도가 없으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제시

어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2) 수환경의 보전

- 가) 수결조사지점 선정사유 및 조사지점의 현황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다 지류와의 함류 또는 오염물질 유입, 개수계획 예정 등 수질 조사지점 선정사유를 제시
- 나) 하천은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고, 하도정비는 가급적 배계하여 하천의 다양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다) 호안은 물리의 안정성 확보, 수생태계·육상생태계의 단절방지 및 다양한 수범식물의 정착을 위해 가능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진환정적인 호안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식생용비, 파라텟 등 콘크리트 제품은 경관상 이질감이 들고 식 생활하도 극히 제한적인 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적용
- 경사가 급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석 쌓기 등의 인공적인 공범을 지양하고 현재의 자연 호안으로 축제·보축
- 라) 홍수당에 대비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축제 및 보축, 호안 정비 등의 구조를 설치 위주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홍수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점토 하여야 함.
  - 하천별 개수 전 후의 빈도별 홍수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시

#### 영동찬 하찬기본계획

- 저수로 구간의 준설을 지양하고, 제방덧쌓기 등의 공법변경
   또는 홍수관리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 영동우안 1지구의 경우, 보호대상 농경지의 면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
- 마) 보와 낙차공은 설치 목직과 용수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본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상실한 시설은 철거를 검토하고, 철거 후 개설치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야 함.
- 하루화장과 연계하여 재설치가 계획된 약목보는 필요성을 면밀히 전토하여 철거를 우선 고려하고 불가피할 경우, 생태적 기업에 대한 수단적 대안을 검토
- 보전지구에 위치한 장고평보의 필요성을 재건토하여 철거 후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
- 바) 대상 하천의 하류 수변구의 해당구간은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계방 등 하천시설을 설치를 지양하고, 적정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수번구역 내 개수계획 여부를 병확히 알 수 있도록 위성사진에 중철하여 표시
- 사) 독마루 포장여부를 병확히 제시하고, 포장할 경우 생태적 기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 등의 볼투수성 포장을 지양하여야 함.

#### 나. 사회·경제 환경라의 조화성

####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현지조사 결과, 영동우안 1자구 인근 등 하천구역 내 영농행위로 인해 농약 및 비료살포, 토양칩식 등 비점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천구역 내 경작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발영하여야 함.

- 4 -

#### 금강유역환경청(6/6)

#### 영동천 하천기본계획

- 나) 하전 구간별 생태적 특성을 중합적으로 반영하여 채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보고서 상에는 지구별 하천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지구별로 주변 사건, 트지이용개획, 위성 사건에 지역구분하여 교시 등)를 제시
- 기존 및 신규로 천수지구를 지정할 정우 위성·현장사진 및 도면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지정 타당성(주민 수, 이용대상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 기타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에는 미반영 사유와 대안을 계시하여야 함.
  - 반영여부들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함께 제시
- 2) 참여 기술인력 명단과 실제 참여자가 상이하므로 해당 내용 확인 후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참여자 명단 착성 시에는 실제 참여자를 기재하여야 함.
  - 수절·분석 기술인력 명단과 측정 기록부 상의 분석책임자가 상이
- 3) 부록의 조사포에 현지 식생 및 동·식물상, 어류조사를 식물분류 기사 1인이 같은 날에 모두 조사한 것으로 제시, 현실적으로 하천 현광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재조사 후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끝.

# 3.5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의견수렴결과

# 3.5.1 주민의견

구 분	주 민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 노 원 구	계2리 마을 앞 토사퇴적 및 수위	<ul> <li>금회 기본계획(안)에는 해당 병목지역의 확폭 및 준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고정보의 가동보 대치, 보다 넓은 확폭 계획 및 유로 변경 등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영동천의 병목현상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li> </ul>	
	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장고	○기존 보(장고평보 및 약목보)와 해당 지역의 신규수리검토를 추가로 병행 실시하였으며, 각계역 인근의 침수지역 개선을 위해 각계1교의 이설 계획과 영동좌안1지구와 영동우안2 지구 등의 축제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안정성 확보를 검토하였음.	
	교각으로 인하여 마을 침수가 가	<ul><li>해당 구조물은 한국철도 공사 소관 으로 기본계획 반영여부는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li></ul>	
류 기 수		<ul><li>하천기본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 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기간을 실시하였음.</li></ul>	

# 3.5.2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하천기본계획(재수립)으로 상위계획과	초안 의견을 반영하여 본안 보고서 작성 후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자료를 충청북도 환경정책과에 제출 하도록 하겠음.	
아사업계획구간 내 현지조사결과 수달, 원앙, 황조롱, 감돌고기 등의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 먹이원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환경부의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 경영향평가 지침" ('13.11)에 따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식지 조성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식물상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현황 조사 및 공사시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 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및 보존대책을	
있도록 해당 유역의 강우 및 지형적인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사로 인하여 토사유출에 의한 하천오염, 하천 생태계의 교란 등에 대한 영향예측 및	
<ul> <li>사업 시행 시 공사가 따르는 사항으로 환경 관련 제반규정(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을 사전에 이행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 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li> </ul>	이행할 계획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 적정 등으로 계획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오염 등)될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협의 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시행 하도록 하겠음.	

# 3.5.3 충청북도 수질관리과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부하량 범위내에서 할당을 받아 추진 하였음.	

# 3.5.4 영동군 안전관리과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ul><li>평가항목과 범위결정의 전반적인 사항이 적정하게 제시되었음.</li></ul>	<ul><li>본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범위를 검토</li><li>선정하였음.</li></ul>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되도록 검토가	<ul> <li>하천의 이·치수 측면 뿐 아니라 생태계, 수질 등 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ul><li>환경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 하천으로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li></ul>	
가급적 인공적 직선하천은 지양하고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 강우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를 피하여 공사시기를 조절 하고, 가배수로 설치 및 충분한 규모의 침사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준설로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법, 우기시 공사중단, 오탁방지막 설치 등 저감대책을 계획하였음.	
<ul> <li>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환경 및주민생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발생될 경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함.</li> </ul>	반영하여 가동보 2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으며,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 비산방진망 설치, 방음판넬 등의 저감대책을 계획 하였음.	

# 3.5.4 영동군 환경과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 환경영향평가 검토대상 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수질오염총량할당 대상이므로 영동군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부하량 범위내에서 할당을 받아 추진	
<ul> <li>공사로 인한 먼지, 토사유출 등 환경 오염발생이 예상되고, 영동천 주변은 도심지역으로 주거생활 환경에도 영향이 예상되므로 친환경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기 바람.</li> <li>도심지역등 주거지역은 환경영향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확대하여 평가 하기 바람.</li> </ul>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변 환경 및 주민생활(민원포함)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음판넬, 주기적인 살수 등의 저감대책을 계획하였음.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유출 방지 계획 및 유류 유출시 비상	<ul><li>교량 및 보 재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돌리기 공법, 우기시 공사중단, 오탁방지막 설치</li></ul>	
수립하기 바람.	등 저감대책을 계획하였음.	
	· 본 계획 시행 시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철저히	
허가·신고등의 사전절차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	이행할 계획임.	

# 3.5.5 금강유역환경청

구 분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1. 총 괄	가. 동 내용은 영동천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검토의견으로서, 아 래의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하 천의 이·치수 측면 뿐 아니라 자 연친화적 내용이 중점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수렴을 통하여 하천의 이·치수 측면	
	나.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환경과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최소한의 정비 계획수립	최대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음. - 하천환경과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하천 상·하류 구간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천 유역 영향과 관리를 위한 적정한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의견에 따라 하천 상·하류 구간의 환경영향을 분석 및 예측하여 보전 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계획하고, 하천유역 영향과 관리를 위한 적정	
	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결과를 도출한 근거 및 방법 등을 명시하고, 결과는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	평가서를 작성하였으며, 결과를	

 구 분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 고
I. 항목별 검토의견	1. 계획의 적정성 가. 단순히 관련 계획을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계획의 일치하는 내용 및 변경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영동천 총 연장 중, 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과 현재 수립하는	• 금회 과업에 있어 본류인 금강하천 기본계획의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본류하천 및 지류하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등의 관련구간을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ul> <li>가. 자연환경의 보전</li> <li>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li> <li>가)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 법정 보호종인 수달, 황조롱이 등이 서식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주요 생물서식지 등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li>사업구간 내 서식 또는 서식가능성이 있는 주요보호종은 도면및 위성사진에 출현지점, 출현예상지점, 분포 등을 개수계획과 중첩(구간좌표 포함)하여 표시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제시</li> </ul>	대상지역 내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 분포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사업 지역 내 법정보호종 출현 시 보전방안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업구간 내 동·식물상 조사지점 및 출현지점을 위성도에 표시하여	
	대형무척추동물의 문헌조사 결과 를 누락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제시 하여야 함.	• 현 유로를 최대한 유지하고, 인위적인 하상정비를 지양하여 불필요한 생물 서식공간의 훼손 및 교란을 최소화 하였으며, 식생활착이 가능한 친환경	

구 분	검 토 의 견	반 영 내 용	비고
II. 항목별 검토의견	라) 현재 개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보와 낙차공이더라도 유량이 극히 적거나 수질이 좋지 않아 어류의 서식이 현저히 적은 경우가 아니라면 하천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어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새들보의 경우, 어도가 없으므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제시	되는 3개소의 보(약목보, 장고평보, 새들보)에 대해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어도 설치를 계획	
	2) 수환경의 보전 가) 수질조사지점 선정사유 및 조사 지점의 현황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타 지류와의 합류 또는 오염물질 유입, 개수계획 예정 등 수질조사 지점 선정사유를 제시		
	나) 하천은 기존 선형을 최대한 유지 하도록 하고, 하도정비는 가급적 배제하여 하천의 다양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다) 호안은 물리적 안정성 확보, 수 생태계·육상생태계의 단절방지 및 다양한 수변식물의 정착을 위해 가능한 완경사로 조성하고, 친환경 적인 호안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식생옹벽, 파라펫 등 콘크리트 제품은 경관상 이질감이 들고 식생활착도 극히 제한적인 바, 가급적 최소한으로 적용  - 경사가 급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석 쌓기 등의 인공적인 공법을 지양하고 현재의 자연호안으로 축제·보축	형식을 제시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시 제시된 기준을 근거로 가능한 완경사 및 친환경적인 호안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음. - 실시계획 수립시, 하천의 소류력, 수리특성 등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추천호안 형식 중 최대한 친환경적 호안공법을 선정토록 하겠음.	
	저하시키는 축제 및 보축, 호안 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의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홍수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을 수립하였음. - 영동천의 개수 전·후의 빈도별 홍	

구 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고
II.		· 준설을 최대한 지양하여 만곡부	
항목별	제방덧쌓기 등의 공법변경 또는 홍수관리구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및 퇴적부에대한 최소한의 준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치수적인 측면	
검토의견	중구선니구식으로 선디에는 정신들 검토	계획을 구립이었으며, 시구적인 국민 의 최소한의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	
	· 영동우안 1지구의 경우, 보호대상		
	농경지의 면적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홍수관리구역 지정 등	따라 제방계획을 수립하였음.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		
		· 보 및 낙차공의 설치목적 및 용수	
	사용계획을 제시하고, 본래 설치 목적에 따른 기능을 상실한 시설은	사용계획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과업 범위 내 위치하고 약목보 및 장보	
	철거를 검토하고, 철거 후 재	평보는 현재 이수목적으로 이용되고	
	설치는 최소한으로 반영하여야 함.	있는 구조물로써 현재 제내지 농경지에	
	- 하폭확장과 연계하여 재설치가 계획	농업용수 공급 및 침수지역 개선에	
	된 약목보는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철거를 우선 고려하고 불가		
	피할 경우,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을 검토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철거 후	
	- 보전지구에 위치한 장고평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철거 후		
	필요성을 세심도하여 설계 우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	후 재설치하도록 계획하였음.	
		• 해당 수변구역 내 본 하천기본계획에	
	구간은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		
	할 수 있도록 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적정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수변구역 내 개수계획 여부를	으로 계획함. - 수변구역 내 개수계획을 명확히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위성사진에		
	중첩하여 표시	표시함.	
		· 금회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하고, 포장할 경우 생태적 기능성		
	을 함께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		
	등의 불투수성 포장을 지양		
	하여야 함.	지향하는 방안(1순위:흙다짐, 2순위: 투수포장)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임.	
	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구구포경)를 심모이도록 될 계속합.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가) 현지조사 결과, 영동우안 1지구	· 영동천 우안1지구(하천구역)는 농약 또는	
	인근 등 하천구역 내 영농행위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로 인해 농약 및 비료살포, 토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구역(하천법	
	양침식 등 비점오염물질이 발생		
	하고 있는 바, 하천구역 내 경	계획에 반영하여 제시함.	
	작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본계 획에 반영하여야 함.		
	럭게 한경역역약 함.		

구 분	검토의견	반영내용	비고
II. 항목별 검토의견	나) 하천 구간별 생태적 특성을 종합 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계획 적인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보고서 상에는 지구별 하천환경 정비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어 계획의 적정성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지구별로 주변 사진,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계획하천은 친수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지구별 구체적 현황자료(지구별 주변 사진, 위성사진에 지역구분하여 표시)를	
	계획, 위성사진에 지역구분하여 표시 등)를 제시 - 기존 및 신규로 친수지구를 지정할 경우 위성·현장사진 및 도면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제시 하고, 친수지구 지정 타당성 (주민 수, 이용대상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밀집지역 및 도심지에 인접한 구역	
	다. 기타		
	<ul> <li>1)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 시에는미반영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함.</li> <li>-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해당 페이지를 함께 제시</li> </ul>	<ul> <li>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하였으며,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지를 함께 제시하였음. 또한, 미반영시에는 미반영 사유를 제시하였음.</li> </ul>	
•			
	3) 부록의 조사표에 현지 식생 및 동·식물상, 어류조사를 식물분류 기사 1인이 같은 날에 모두 조사 한 것으로 제시, 현실적으로 하천현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조사 후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생태조사 대행업체에 발주하여 2차	